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발간사



대한민국에 오신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설하여 외국국적동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취업관리제 시행으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의 취업활동을 허용하였고, 2007년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00년 101,000여명에서 2021년 780,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를 위해 제작된 맞춤형 안내서로, 잊어서는 안 되는 주요 신고 의무사항, 자주 위반하게 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부터 외국인등록, 기간연장, 취업 가능 분야 등에 대한 상세 안내까지 외국국적동포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가 동포 여러분의 국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재 유

CONTENTS

I	외국국적동포가 궁금하다!	04
	1. 외국국적동포란?	05
	2. 외국국적동포 이주사 소개	05
	3. 외국국적동포는 어떤 경로로 입국 & 체류할 수 있나요?	07
II	입국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	10
	1.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	11
	2. 체류자격 변경 흐름도	11
III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12
	1.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13
	2. 제도별 세부절차	15
	3. 기타 참고사항	38
	※ 별첨자료	40
IV	동포 가족 체류 절차 안내	79
V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82
VI	[Q&A]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86
VII	기타 생활정보 안내	99
	1. 각종 문의·상담 및 정보열람 안내	100
	2.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관할 안내	102
	3. 전국 동포 체류지원센터	103

PART I

외국국적동포가 궁금하다!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외국국적동포가 궁금하다!

1. 외국국적동포란?

|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정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외국국적동포 이주사 소개

우리 동포는 어떤 경로로 국외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지역별 외국국적동포의 이주사를 소개합니다.

(소개 순서 : 가나다순)

러시아·CIS 지역

현지에서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독립국가연합 한인의 이주는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860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조약으로 러시아와 조선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접하게 되었고, 1869~1870년에 발생한 이북지역의 대기근은 러시아로의 대규모 이민을 일으켰다.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난 즈음에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0만 명가량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8만여 명이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였고 이 수는 연해주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였다.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연해주 지역을 독립운동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이주가 시작되었다.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고국 땅을 넘어서 이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망명, 독립운동 성격을 띠는 이주는 조선에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이주는 1917년과 1923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연해주 지역에 정착하였다.

1937년 스탈린은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인이 일본의 첩자역할을 할 것이라는 군사적 우려와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을 이들의 노동력에 의해 개간한다는 경제적 목적 하에 171,781명의 한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정치·경제적 불안과 부상하는 민족주의를 피해 한인은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지역과 우크라이나에 집중 이주하여 '고본질'이라고 불리는 계절 농사에 치중하였다. 사할린 지역의 한인은 1860년대 자발적인 농업 이주로 형성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일제 말기의 강제 징용에 의한 것이었다. 일제 말기 이 지역에 강제 징용된 한인은 15만 명 정도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에는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미주 지역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03년 1월 일단의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노동자로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01명의 한인을 태운 최초의 이민선은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이후 1905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총 7,226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1910년부터 한인 여성이 추가적으로 이주하며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한인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 또는 도시 주변 일용노동자로부터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사업 분야(예를 들어 자영업, 쌀농사, 고구마 농사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1903년부터 1915년까지 총 1,087명의 한인들이 본토로 이주하였다.

초기 한인 이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류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 간 정치 망명자들이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가량이 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한인사회의 지적·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상하였고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출처: 국가기록원)

유럽 지역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는 지역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유럽 지역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2,050명)인데,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한국인들이 이주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는 한국 고아 4만여 명이 입양되어 성장함으로써 한인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중부유럽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60년대 독일파견 광부, 간호사의 정착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네 번째는 동유럽 지역으로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주재상사원의 이주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출처: 국가기록원)

중국 지역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재중 한인의 모태는 19세기 중엽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1860년대와 187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재해와 흉년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많은 이재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간도 지역의 한인 인구는 1860년대에 이미 7만 7천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 초기에는 한인이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에 정착하였으나 점차 연변과 기타지역으로 확산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에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만주로 한인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동북부 지역의 한인사회는 더욱 확장되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한 조선 농민 착취와 궁핍화는 많은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켰고, 농민에 비해 그 수는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한인 인구는 1910년에 22만 명에 달하였고 1930년에는 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국 동북지역을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한인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으며, 그 결과 1940년에는 한인 인구가 1백 4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건설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3. 외국국적동포는 어떤 경로로 입국 & 체류할 수 있나요?

- 외국국적동포(이하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증이 필요합니다. 사증은 국적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91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동포로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VISA)의 종류와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에 대해 알아보까요?

동포를 위한 사증(VISA) & 체류자격 종류

① 단기방문(C-3-8)

단기방문(C-3-8) 사증은 대한민국에 잠시 방문하고자 하는 동포를 위해 발급됩니다.

- 발급 대상 요건 :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 종류 :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 체류 가능 기간 : 입국 1회당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유효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출입국하며 입국 시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단기방문(C-3-8) 사증으로 체류하는 동안 국내 취업 전면 제한!

어떤 종류의 일이든 단기방문(C-3-8) 사증으로 입국 후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사증 & 체류자격이 따로 있으니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희망하는 동포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② 방문취업(H-2)

방문취업(H-2) 사증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동포 중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포에게 발급됩니다.

- 발급 대상 요건 : (1)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2) 18세 이상 동포
- *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체류 가능 기간 : 3년(이 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후 최대 3년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후단의 상세 방문취업(H-2) 자격 설명 부분을 참고하세요.

☑ **주의사항** : 취업허용 업종에서만 취업활동 가능!

방문취업(H-2)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나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취업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으니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후단의 상세 방문취업(H-2) 자격 설명 부분을 참고하세요.

③ 재외동포(F-4)

재외동포(F-4) 사증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동포(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 체류 가능 기간 : 1회 최대 3년

☞ 체류기간 연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 체류 가능

☑️ 주의사항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취업활동 가능하나,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후단의 재외동포(F-4) 자격 설명 부분에 제한 범위 고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동포영주(F-5)

동포영주(F-5) 자격은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장기체류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자격으로, 입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포영주(F-5)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발급 대상 요건** :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

☑️ 주의사항

영주(F-5)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F-5)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후단 동포영주(F-5) 자격 설명 부분의 영주취소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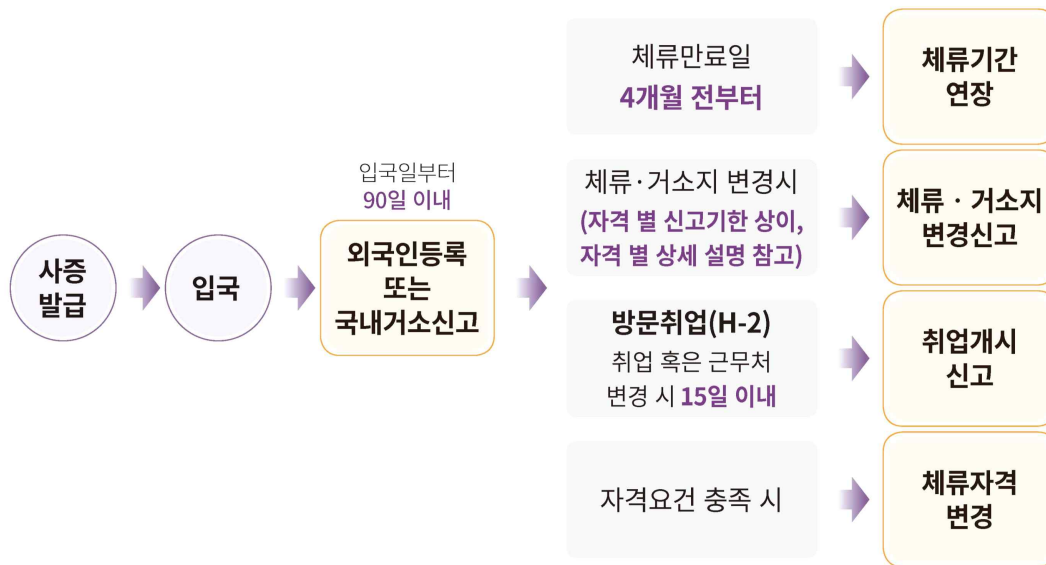
입국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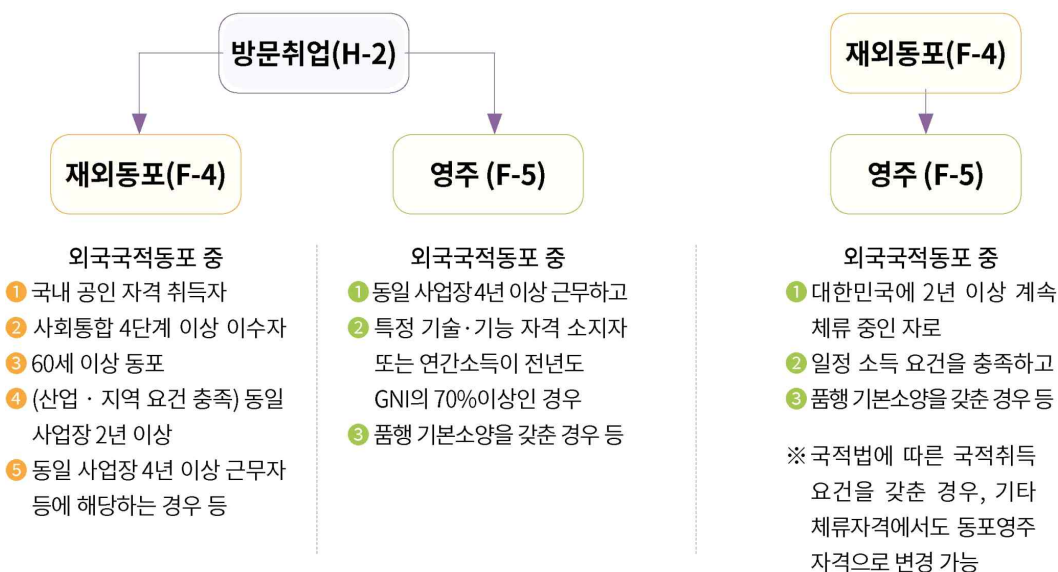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입국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

1.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



2. 체류자격 변경 흐름도



※ 자격 별 자격변경 상세요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PART III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① 단기방문제(C-3)

-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15. 4. 20.부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

②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취업 외 목적)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취업 외 목적으로 연장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범칙금 부과

-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는 단순노무분야 46개 업종(<별첨 3> 참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③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가업대표, 국내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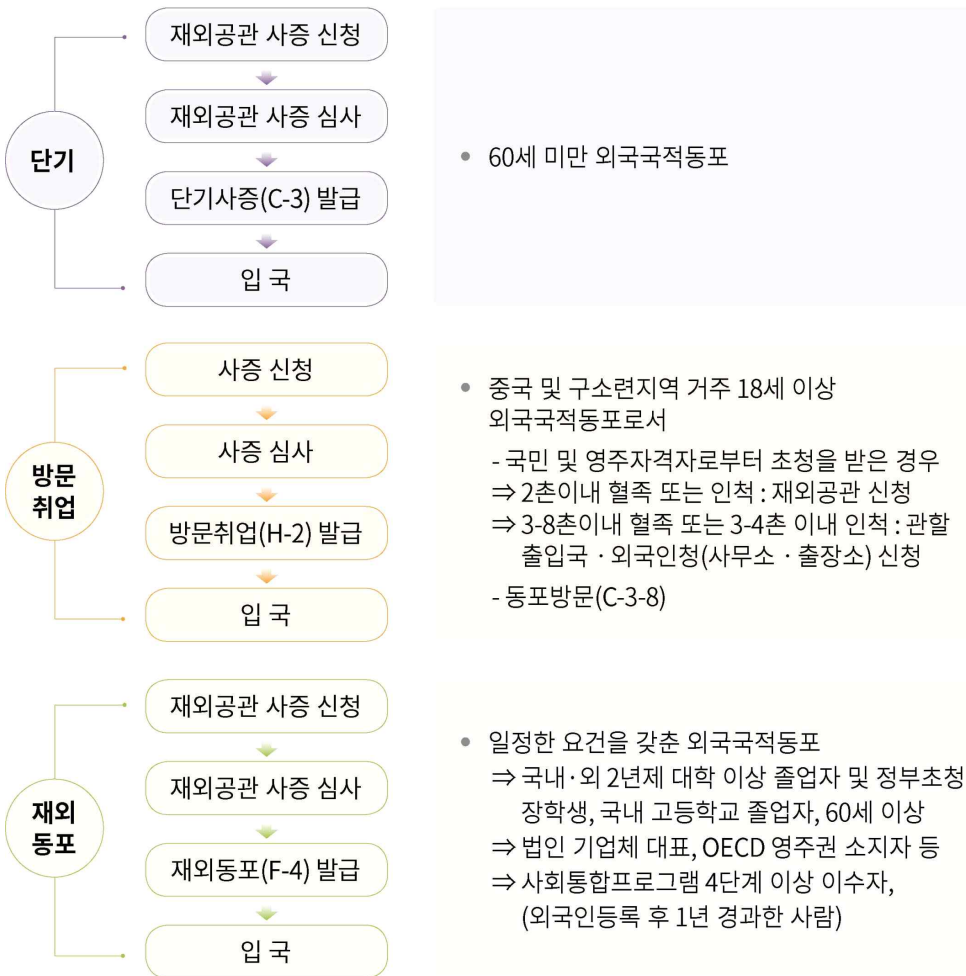
④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무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 제도별 세부절차

①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절차 흐름도



② 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 ☑ 동포방문(C-3-8) 자격 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급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미만인 자
- ※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다.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확인사항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라. 사증발급 내용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
※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 가능

③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 ☑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기본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자격 대상별 제출 서류

- [재외공관 사증 발급]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고 동포

대 상	제출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 ·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② 무연고 동포

대 상	제출서류						
○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 동포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table border="1" data-bbox="165 443 751 689"> <tr> <td>2021년 신청대상</td><td>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td></tr> <tr> <td>2022년 신청대상</td><td>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td></tr> <tr> <td>2023년 신청대상</td><td>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td></tr> </table> - 방문취업(H-2) 총 정원 (250,000명, '22. 1월부터 변경 시행)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초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 출국명령)한 사람 ※ (주의)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기준에 따라 신청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구소련 지역(CIS) 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③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대 상	제출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가능(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 [국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청(사무소·출장소)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대 상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②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상태 확인

- 제출대상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 4>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다.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건강상태 확인
 -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 5>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을 부여(취업목적, 취업 외 목적 공통)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부여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 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후 방문신고,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 **【Hi-korea】** >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 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 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 10. 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 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 아래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신청,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 4. 1. 이전 【한·중수교('92. 8. 24)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사람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18세 이상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지 않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제한. 다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별제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별첨2 참조)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별첨3 참조)
- 기타 대상별 소명자료,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업 목적)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 (취업 외 목적)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 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치료순응도, 전염성 여부, 완치 여부 등에 따라 체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

-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부여

□ 대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별첨 11)을 제출해야 함

□ 체류기간연장

- 1회, 1년
(본인 희망 시 추가 연장 가능하나 취업활동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제한)

□ 취업 외 목적 연장 여부 확인방법

-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 ② 정보조회 →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 ④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 (취업 가능 H-2) “취업 가능” 문구 표출
 - (취업 외 목적 H-2) “취업 불가” 문구 표출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 '18. 5. 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 5. 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나.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절차

■ 공통 제출서류

-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¹⁾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11. 10. 17.)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 상	제출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 등 입증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4)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5) 및 비취업 서약서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 (자영업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 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 (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채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 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무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별첨 6)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 참고사항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초·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2)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요건(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자격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증명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 면제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참고사항 -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 (재학기간 증빙서류 필수)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⑱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재외동포 자격부여 입증서류(필요 시)

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 상기 세부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가능(국내외 대학 졸업자, 국내 공인 자격 취득자, 외국인등록자(과거등록포함),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등)

라.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절차

-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여권용 사진),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 단,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는 최초 부여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별첨 9 참조)에 해당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에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5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한다)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주택 등 자산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²⁾

※ 단,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 가능

• 자산의 기준 :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면제 대상(생계유지 능력)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 중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2)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함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완화 대상(생계유지 능력)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면제 대상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18조의4에 따라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됨

※ 본 매뉴얼의 영주(F-5)의 “품행단정” 요건 참조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세부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대 상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 이상	●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순자산 = 자산액 - 부채액 ** 예)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 4억 1,452만 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인정되는 자산 -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추가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 입증서류
------	---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 1)
------	---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
 -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별첨 18)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다. 영주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① 상실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가능
 -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② 취소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① 「형법」,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나)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⑥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사증·체류 세부절차

-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에 관한 사증발급 및 체류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여권포함)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다.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기간 연장

-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자격 변경

-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 부여

- 대상 : 동포의 국내출생 자녀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가능),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국 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요)

3. 기타 참고사항

①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사증, 출입국, 체류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②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전방문예약제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동포방문(C-3-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방문취업(H-2)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 면제대상 포함
-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외동포(F-4)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 면제대상 포함

영 주(F-5)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 면제대상 포함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 고액 투자자,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를 신청하는 사람

라.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¹⁾ 권한 있는 기관²⁾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증서는 불인정 (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 ②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중국)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³⁾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⁴⁾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3.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마.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사증발급 불허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3) 정식 협약명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문서 발행국이 자국문서로 확인하면 협약 가입국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문서를 자국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약임

4) '13.5.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불허	선고일로부터 6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3년 간 사증발급 불허	선고일로부터 4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바.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2. 3월 기준)

지역	국가 / 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나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고, 향후 가입국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동 기준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발급·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시 제출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적용됨 (영주(F-5) 자격변경시 제외)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⁵⁾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⁶⁾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5)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기준 적용).

6) 전체 교육부 한국교육원 변경(19개국 43개원, 체류관리과-1499, 2022.02.17.)

방문취업(H-2) 체류허가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 재외공관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재외동포(F-4)

- 만 13세 이하인 사람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신청자
- ‘19. 9. 2.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라. 처리 기준

- 사증발급 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한국어능력 입증여부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1년의 사증발급 ※ 발급시 비고란에 한국어능력 제출 필 입력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체류허가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46개 업종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농축산업	(1) 작물 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외> • 산동물 도매업(46205)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47852) • 동물견인 여객운송업(49239) • 동물견인 화물운송업(49309) • 신약 연구개발용 동물 사육(70113) • 경마장, 투우장 운영업(91113) • 승마연습장 운영업(91139)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 임업관련 서비스(0204) •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76390) •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 수의 서비스(7310)
어업	(4) 연근해어업(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어류 포획 •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 진주조개 채취 • 산호 채취
	(5) 양식 어업(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광업	(6) 금속 광업(06)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8)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07220)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염수 생산(천연) • 식염 채취 • 간수 생산(천연) •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9)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조업	(10) 제조업(10-34)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 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이차원료)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	(13) 건설업(41-4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매 및 소매업	(14)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46205)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용 수산 동물도 포함한다. <예 시> • 소, 말, 돼지 도매 •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 조류 도매 • 사슴, 멧돼지 도매 • 열대어 도매 •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제 외> •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46315)
	(1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원단, 원모 및 원면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 원피 및 원모피 도매 • 영지버섯 도매 • 잎담배 도매 • 한약재 도매 • 누에고치 도매 • 원모 및 원면 도매 • 미가공 커피 도매
	(16) 과실류 도매업 (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18) 가정용품 도매업 (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9)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 (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46791)	재생활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재생용 금속 수집 및 판매 • 재생용 비금속 수집 및 판매 •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21)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된다.
	(2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23) 무점포 소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24) 육상 여객 운송업 (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25)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 냉장창고 운영 • 냉동물품 보관 • 얼음보관소 운영 • 모피 보관(냉동) • 냉동식품 보관 •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 미곡종합처리장(10611) •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26)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28) 호텔업(55101)	일반적으로 안내 데스크(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판매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 산업설비·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37011)
	(37)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청소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 탱크 청소 서비스 • 로 및 굴뚝 청소 •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 활주로 청소 서비스 • 거리 청소 서비스 • 선박 청소 서비스 •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 분뇨수거 및 처리(3702) •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3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장애인 및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 자동차 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4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카센타(전문수리) • 자동차 타이어 • 자동차 도장 • 자동차 경정비 •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 카인테리어(전문수리) •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 원동기 전문 정비업
	(4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43) 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대중 목욕탕 • 온천탕 • 찜질방 • 황토방
	(44) 산업용 세탁업 (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45)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	(46) 가구내 고용활동 (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건강상태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_____),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_____), 아니요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_____),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별첨 5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건 강 진 단 서

제 호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 진 (3cm× 4cm)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결 핵		정신질환			
매 독		간염(HBs Ag)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	--	-----	--	----	--	----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Letter of Pledge on Unemployment for Simple Labor Occupation

1. Personal Information

Nationality		Name	English () Chinese ()
Date of Birth		Sex	
Place of Work		Position	
Working Period		Purpose of Sojourn	
Address in Country of Residence			

2. Content of Pledge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be hired to simple labor occupation during my sojourn in Korea. I acknowledge by signing that any violations of Pledge can be subject to penalty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Year Month Day

Pledger : (Signature)

The Minister of Justice

国内单纯劳务工种非就业 誓约书

1. 身份信息

国 籍		姓 名	英文() 汉字()
出生日期		性 别	
公司名称		职 位	
在职期间		入境目的	
本国地址			

2. 誓約內容

上訴本人誓約，入境大韓民國後絕不從事單純勞務工種。

若有違反，將承擔出入境官理法上的任何處罰。

年 月 日

申請人 : (簽名 或 印)

法務部長官 敬啟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СТОГО ТРУДА

1. Личные данны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лное имя	Англ.() Китайс. ()
Дата рождения		Пол	
Место работы		Должность	
Период работы		Цель визита	
Адрес в Корее			

2. Содержание обещания

Я, вышеуказанное лицо, приеха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аю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стого труда,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риму любое наказа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ГОД месяц ЧИСЛО

Заявитель : (подпись или печать)

Министру МЮ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1. 피보증인(소속직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영문() 한자()
생년월일		성별	
직위		학력	
재직기간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신원보증인(기업대표)			
국적		성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회사명		자본금	
직원 수		전화번호	
회사 소재지			
3. 보증내용			
○ 신원보증인은 위 피보증인(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 8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8	117	120	161
01 사업관리(1/0)	01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4/25)	021 경영(6)					
	022 회계(3)					
	023 사무(9)					
	024 생산관리(7)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03 금융·보험(1/0)	031 금융·보험					
04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1/0)	041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1/0)	051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6 보건·의료(1/3)	061 보건·의료(3)					
07 사회복지·종교 (1/2)	071 사회복지·종교(2)					
0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3/13)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11)			서비스·경험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웹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 그래픽스응용
	083 방송(2)				영사	영사
09 운전·운송(1/2)	091 운전·운송(2)				철도 운송	농기계운전
10 영업·판매(1/4)	101 영업·판매(4)					
11 경비·청소(1/0)	1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2/8)	121 이용·미용(7)		이용			이용
			미용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1)					
13 음식 서비스 (2/12)	131 조리(12)		조리		한식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일식조리
					북어조리	북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14 건설(6/98)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 도장
					건축 목공	건축 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설비	건축 설비	
		건축 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46)	농어업 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 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 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응용 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143 조경(4)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44 도시·교통(5)	교통		교통	교통	
		도시 계획		도시 계획		
	145 건설 배관(3)		배관		배관	배관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장치 운전
						지게차 운전
						굴삭기 운전
						기중기 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 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타워크레인 운전
15 광업자원 (2/11)	151 채광(9)			광산 보안	광산 보안	광산 보안
						시추
		자원 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152 광해방지(2)	광해 방지		광해 방지		화약취급
16 기계(7/79)	161 기계제작(14)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 응용가공	컴퓨터 응용선반
						컴퓨터 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 조립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31)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 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 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 정비
					생산 자동화	생산 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 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63 철도(5)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6)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165 항공(8)			항공	항공		
	항공 기관					
					항공기관 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 자동차			
167 금형·공작기계 (7)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 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 금형 설계			
17 재료(5/38)	171 금속·재료(17)	금속 가공				
		금속 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172 관금·제관·새시 (5)		제선			제선
						축로
			관금제관		관금제관	금속재창호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관금제관
	173 단조·주조(4)		주조		주조	플라스틱창호
						주조
	174 용접(6)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원형
						용접
18 화학(2/12)	181 화공(9)			정밀화학		특수용접
		화공		화공		광고도장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금속도장
				화학분석		표면처리
	182 위험물(3)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표면처리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9 섬유·의복 (2/17)	191 섬유(8)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 (날염)
		의류		의류		염색 (침염)
	192 의복(9)				신발	
						양복
						양장
						신발류 제조 세탁
20 전기·전자 (2/39)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 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응용		전기공사	전기공사	
	202 전자(23)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 어개발		
				로봇하드웨어 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전자계산기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응용			
						전자카드
					3D프린터 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3/31)	211 정보기술(15)					
				빅데이터분석		
					사무 자동화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6)			방송 통신	방송 통신	방송통신
				무선 설비	무선 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10)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22 식품가공(2/11)	221 식품(7)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품가공
				식육가공		
	222 제과·제빵(4)		제과			떡제조
						제과
						제빵
						사진
23 인쇄·목재·가구· 공예(2/19)	231 인쇄·사진(5)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가구제작	가구제작
	232 목재·가구·공예 (14)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석공예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24 농림어업(4/39)	241 농업(14)	농화학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원예
		종자		유기 농업 종자	유기 농업 종자	유기 농업 종자
				화훼 장식	화훼 장식	화훼 장식
	242 축산(5)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243 임업(13)				버섯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임산가공
				임업 종묘		임업종묘
	244 어업(7)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		
25 안전관리(2/42)	251 안전관리(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건설안전	
		기계 안전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15)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37)	261 환경(24)				농림토양 평가관리	

		대기 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 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 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262 에너지·기상(13)			기상		
				기상 감경		
		기상 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 전설비 (태양광)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6.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부터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건물건축 운반인부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보석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2) 광업 단순 노무원(91002)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재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 광원(77411) • 채석원(77412)
	(3)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적재원 • 하역원 • 육상화물하역원 • 부두노무원 • 선박하역원 • 제품운반원
	(4) 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 예시】 • 가구 운반원 • 가구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과일 운반원 • 어류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창고 운반원
	(6) 우편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우체부 • 우편물 집배원 • 우편배달원
	(7) 택배원(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택배 배달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8) 그 외 택배원 (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퀵서비스 배달원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9) 음식 배달원 (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식사배달원 • 야식배달원 • 요리배달원 • 도시락배달원 • 중국음식 배달원 • 분식배달원 • 음식배달원 • 치킨 배달원 • 피자 배달원
	(10) 음료 배달원 (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1) 신문 배달원 (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2) 그 외 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동 포장원 (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동 포장원
	(14) 수동상표 부착원 (93002)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작업라벨부착원 • 수작업상표부착원
	(15) 건물청소원 (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을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6) 운송장비 청소원 (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17) 그 외 청소원 (941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18) 쓰레기 수거원 (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쓰레기 수거원 • 쓰레기 청소부 • 분뇨 수거원
	(19) 거리 미화원 (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거리 미화원 • 공원 청소원
	(20)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재활용품 수거원
	(21) 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22) 아파트 경비원 (9421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아파트경비원 • 빌라경비원
	(23) 건물 경비원 (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 직업 예시 】 • 청사경비원 • 학교경비원 • 상가경비원 • 건물경비원 • 병원경비원 • 빌딩경비원 •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 시장경비원 • 공장경비원 • 공사현장경비원 • 공사경비원
	(24) 그 외 건물관리원 (942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순찰원 • 공원안전요원 • 공원관리인 • 공원질서요원 • 놀이시설질서유지원 • 별장 관리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25) 검표원 (9422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고속버스검표원 - 극장검표원 - 놀이공원검표원 - 통행료검표원 - 승차권검표원 - 사우나검표원
	(26) 패스트푸드 준비원(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패스트푸드원
	(27) 주방보조원 (95220)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방 보조원 - 식재료 세척원 - 조리사 보조원 - 학교급식 보조원
	(28) 주유원 (95310)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유원 - 가스충전원
	(29) 매장정리원 (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30)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 직업 예시 】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31)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32) 산불 감시원 (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 직업 예시 】 산불 감시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33) 계기 점검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점검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계기 점검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34)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가스 점검원
	(35)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36)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37) 주차 안내원 (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주차 안내원
	(38)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39)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제 외】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40) 환경 감시원 (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환경 감시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41)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심부름원 • 사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4)	(1) 피부관리사 내 발 관리사 (42231)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 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 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발 마사지사 • 발 관리사
	(2) 목욕관리사 (42234)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 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목욕관리사
	(3) 혼례 종사원 (423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 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 한다.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 직업 예시 】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4) 호텔 서비스원 (43221)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탁물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벨맨 • 도어맨 • 룸서비스맨 • 벨보이
	(5)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43229)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콘도 서비스원 • 모텔 시중원 • 여관시중원
	(6) 노래방 서비스원 (43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 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7)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3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 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8) 골프장 캐디(43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 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illegible]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제조업 (62)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케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기사 이상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이상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이상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이상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이상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일반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전자부품장착	산업기사 이상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상
		조선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금속재료	산업기사 이상
		금속가공	기사 이상
		주조	산업기사 이상
		표면처리	산업기사 이상
	전기·전자	전기	산업기사 이상
		전기철도	산업기사 이상
		전자	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이상
	건설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이상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토목	산업기사 이상
	섬유·의복	섬유	산업기사 이상
	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건설업 (17)	건설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철도토목	산업기사 이상
		건축목공	산업기사 이상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조경	산업기사 이상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농업 (5)	농림어업	유기농업	산업기사 이상
		축산	산업기사 이상
어업 (8)	농림어업	수산양식	산업기사 이상
		어로	산업기사 이상
	식품가공	수산제조	산업기사 이상
	건설	잠수	산업기사 이상

별첨 11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1. 인적사항

국적		성명 (여권 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만료일	
주소지			
국내 체류목적			

2. 상기 본인은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년월일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할 경우 유의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의2 ‘29’에 따른 46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취업 가능 (허용되는 업종 외에는 취업 불가)

*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및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사실을 반드시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PART IV

동포 가족 체류 절차 안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동포 가족 체류 절차 안내

① 자격 요건

동포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부모의 경우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의 부모만 해당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여기서 잠깐!



-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의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②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부여

②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 정보

- ②-1 외국인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②-2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재학증명서 등

참고 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혼인 자녀 제외)
-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

- ②-3 체류자격 변경허가 : 가족 구성원별 허가요건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요건

- 동포의 배우자
 -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 * 체류자격 변경 시 고시국가 여부, 혼인일자 및 혼인경위, 범법사항, 소득수준, 혼인증명서 진위 여부 등 종합 심사 후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 동포의 미취학 자녀
 -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
-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
 -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 ②-4 체류자격 부여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 ※ 다만,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추후 본국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확인을 위해 다음 연장 시까지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징구

PART V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사례 ①

Q

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거소지 변경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A

이사 등으로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14일, 그 외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동포 포함)은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동법 제98조 제2호,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100만 원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사례 ②

Q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따로 출입국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A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만 6~18세 미성년자의 국내 초·중·고교 재학여부 및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신고사항 중 여권정보의 경우에는 인터넷(하이코리아*) 혹은 웹팩스(☎1577-1346)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2호, 동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사례 ③

Q

재외동포(F-4) 자격으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달 전부터 근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점검에 단속되어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었나요?

A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달업은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제94조 제8호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 원 통고처분

사례 ④

Q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방문취업(H-2) 자격 경우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동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사례 ⑤

Q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재발급 대상이 되나요?

A

'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개시 및 영주(F-5)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동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사례 ⑥

Q

제 조카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려 하는데,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이 자격변경 시 문제가 될까요?

A

국내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부여가 제한됩니다. 아래 자격변경 제한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 가.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해당자가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가능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살인, 약취, 유인, 강도, 강간, 추행, 단체 등 구성·활동의 죄 등
 -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범칙금처분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례 ⑦

Q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급한 불일이 생겨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국심사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될까요?

A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 사용 시 여권 부정 사용에 해당되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 원 통고처분

PART VI

[Q&A]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Q&A]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1. 체류 공통 사항

Q1

체류기간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꼭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만료일 전 연장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받지 않을 경우 도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전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체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방문예약(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예약 후 예약 시간에 맞춰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주세요.
-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수수료 2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명(체류기간 연장 등) 선택
-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된 대행 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다음 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 예정입니다. 귀국 전 날짜를 맞춰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이 불가하고 입국한 다음 날부터 사전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전자민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 등록증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록외국인(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단기체류외국인(체류기간 만료 2일 전까지 신청가능)
 - 재입국허가: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
- 전자민원 신청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해당 접수증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발급하는 접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수시로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변경 신청시 신청 후 5일 이내에 교부 일자와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지문 수집 대상자의 경우 지문수집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 기간연장 신청자의 경우 ‘전자민원확인서’를 출력하여 휴대하게 되며 등록증 후면에 허가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날짜 기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변경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접수증’을 휴대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3년 전 계약한 주소지에 현재도 살고 있긴 한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났어요. 체류기간 연장 시 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괜찮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 집 계약서로 체류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신청인 명의의 세금 납부 고지서 또는 2) 숙소제공자 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숙소제공자 집 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5 고향 방문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6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동포 체류자격의 재입국 기간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 체류자격별 동포의 재입국기간은 (체류기간 내에서 출국일로부터)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자격 : 1년
 - 영주(F-5) 자격 : 2년
 - 재외동포(F-4) 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Q7 혼자 타지에서 외롭기도 하고 생활정보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동포들을 위한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을까요?



- 책자 맨 후단에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 11곳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체류 업무에 관한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이용해보세요.

2. 동포 자격별 - 재외동포(F-4)

Q1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허가 시 제출했던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을 한국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재차 제출해야 하나요?

-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과거 방문취업(H-2) 자격 사증 신청 시 재외공관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할 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내야할까요?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체류자격변경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단,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입니다.

Q3 동포의 범위가 4세대 이후로 확대됐는데,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꼭 1세대부터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1세대부터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다만, 초·중·고등학교 재학 동포에 한하여 부모와 가족관계 입증이 될 경우 1세대와의 관계 입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Q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힘들어요.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 네.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은 주중 주간반뿐만 아니라, 주중 야간반, 주말반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시넷 홈페이지 (www.socinet.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Q5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요건으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나요?

- 미용, 조리, 세탁 등 기술·기능 분야 510개의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 510개 분야 취득 가능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본 책자 III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내 별첨 8(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A 업체에서 2018년 8월 1일 취업개시 신고 후 같은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이에요. 4년 1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업·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또는 가정 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상기 조건이 아니더라도 방문취업 자격으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A업체가 농업·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체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꾸준히 근무했을 경우,
 - 취업개시일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8월 1일 이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 그 외 업체인 경우 4년 뒤인 2022년 8월 1일 이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또는 4년 등의 최소기간 요건 계산은 취업개시 신고일로부터 산정되오니 참고하세요.

Q7 ‘코로나19 한시적 계절근로’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지자체에서 발급한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상 180일(6개월)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한시적 계절근로’ 자격으로 등록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가 2022년 1월 3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대상 여부를 거쳐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Q8 2019년 9월 2일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받고
입국했어요. 체류기간 연장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2019년 9월 2일 이전에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 면제 대상은 본 책자 [III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내 별첨 2\(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본국에서 개명을 했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하나요?



- 거소신고를 한 동포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구 여권과 신분증 등 개명 관련 입증서류, 수수료(3만 원), 사진 등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외동포(F-4) 사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동포 자격별 - 방문취업(H-2)

Q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보니 제출서류 목록에 '건강검진 진단서'와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이 있는데 해당 서류들의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 H-2 건강진단서는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병원 이름 및 위치 확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접속 후 [뉴스·공지](#) 메뉴 ➡ [공지사항](#) 메뉴 ➡ [검색창](#)에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키워드로 검색
-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에 한국의 기초법·질서,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아래 경로를 통해 편리한 장소·시간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 신청방법: 소시넷(www.socinet.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조기적응 프로그램](#) 메뉴 ➡ [일정조회 및 참여신청](#) ➡ 여권 소지 후 교육 참석

Q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출했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과 건강검진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검진 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전에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 강제퇴거된 배우자의 만기출국 방문취업 사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내에 완전출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기출국자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입니다.
- 하지만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만기출국 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기간의 만료일(3년)이 다가오는데 한국에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을까요?



- 취업 목적의 경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을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1회에 1년씩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동포 자격별 - 동포영주(F-5)

Q1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 취득 시 순자산 요건은 저축금액만 인정되는 건가요?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모두 인정됩니다. 금융자산에는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며, 실물자산으로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느라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기준소득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 소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 동포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소득 합산 시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전년도 GNI)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50% 이상 요건이 면제되어 가족의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방문취업(H-2) 자격으로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영주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동포 자격별 - 동포의 가족

Q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같은 절차가 있나요?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2

재외동포(F-4) 자격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 동포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 다만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재외동포(F-4)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와 학업 보장을 위해 부모의 방문동거(F-1)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가족들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족관계 사항에 가족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 재외동포(F-4) 자격 간에는 가족관계 사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상 동반가족 표기 가능 대상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다음의 체류자격으로 한정됩니다.

[방문동거 표기 대상 체류자격]

-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 방문취업(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 영주(F-5)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
- 영주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방문동거자격 표기 가능 대상 예시]

- 본인(F-4 또는 H-2):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1인 경우 ➡ 등록가능
- 본인(F-4 또는 H-2):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4 또는 H-2인 경우 ➡ 등록불가

- 또한, 증명서상 동반가족 표출은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되며 체류지가 같은 가족구성원만 사실증명서에 표출됩니다. 동반가족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체류지가 다를 경우 사실증명서에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Q4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재외동포의 배우자(F-1)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할 텐데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미비합니다.



- 동포의 배우자가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 전부터 배우자(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소득요건이 적용 면제됩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이 적용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동포 자격별 - 동포의 취업

Q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려는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된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 중 41개의 직업과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된 12개의 직업 등 총 53개의 직업입니다.
- 53개 직업 목록은 본 책자 [Ⅲ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내 별첨 9\(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 전 제한업종 확인을 통해 불법취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 활동 범위가 궁금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은 요양보호사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취업(H-2)의 경우 취업활동범위에 보건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 외에도 혼동하기 쉬운 동포 취업활동범위 관련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주세요.

직업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간병인	가능	일부 가능*(개인 간병)
요양보호사	가능	제한
육아·가사도우미	가능	일부가능*(가구 내 고용활동)
제조업	일부 제한(수동포장원, 수동표부착원)	가능*
택배업	제한	일부 가능*(택배 상·하차)

* 방문취업(H-2) 자격 취업활동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취업 가능합니다.

Q3 재외동포(F-4) 자격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F-4)의 ‘단순노무’ 등 직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직업이 ‘단순노무’ 등에 해당하면 취업이 불가합니다.

Q4 재외동포(F-4) 자격이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기준에 ‘근로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된 직업은 총 53개이며, 해당 직업 목록은 본 책자 Ⅲ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내 별첨 9(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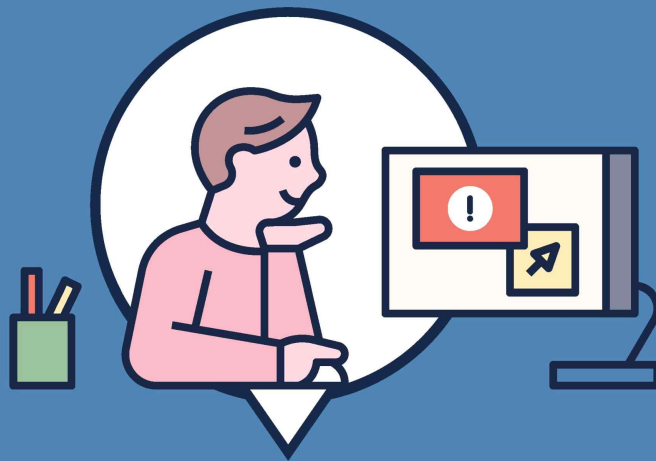
Q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했어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싶는데 뭐부터 해야할까요?



-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 전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안내에 따라 구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취업교육 홈페이지 : <http://eps.hrdkorea.or.kr>
- 취업 시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PART VII

기타 생활정보 안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기타 생활정보 안내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C-3)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및 동포영주(F-5) 자격 부여 대상 확대 등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 현황을 포함한 모든 생활정보 등을 아래 창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1. 각종 문의·상담 및 정보열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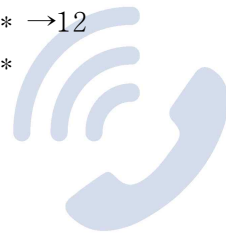
유선 창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20개 외국어 상담 가능
 - 운영시간 : 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상담 가능)
 - 언어 별 단축번호 : (중 국 어) 국번없이 1345 → 2 + *
 - (러시아어) 국번없이 1345 → 0 + * → 12
 - (영 어) 국번없이 1345 →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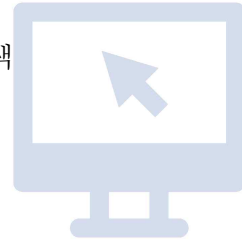
※ 1. 휴대전화 연결 시 02(서울 지역번호) + 1345

2. 해외에서 이용 시 82(국가번호) + 1345



온라인 창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검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최근 뉴스·공지사항 및 중요 이민정책 현황 등 확인 가능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에서 ‘하이코리아’로 검색
 - 각종 체류 관련 민원신청·신청현황·결과조회부터 체류·귀화 관련 상세 안내 등 확인 가능
 - ‘방문예약*’ 신청 가능

사전방문예약제 안내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입니다.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주세요.

☞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SNS 창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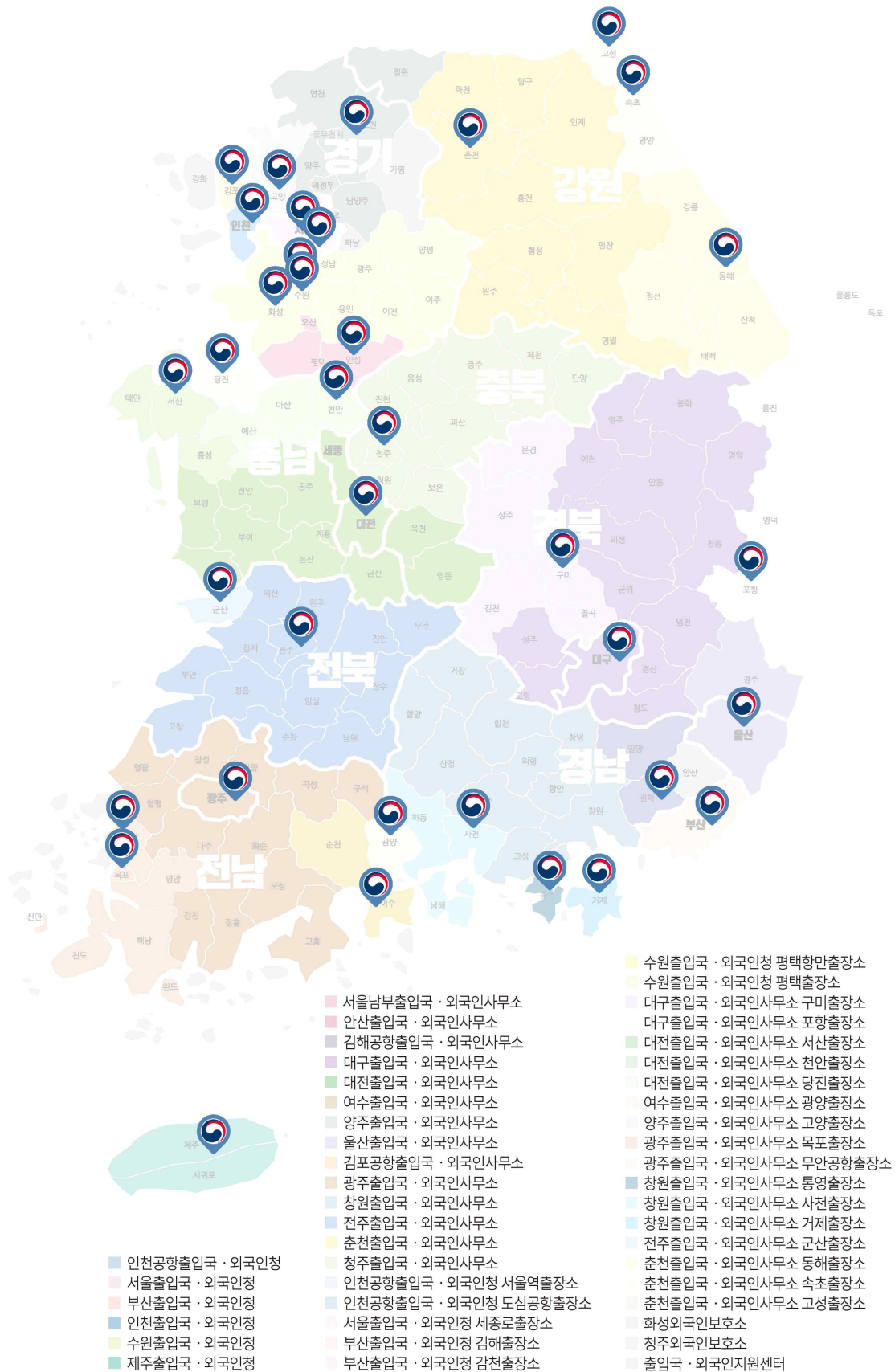
- 카카오톡 메신저앱 검색 창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검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페이스북

- 페이스북 검색 창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검색



2.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관할 안내



3. 전국 동포 체류지원센터

(소개 순서: 가나다순)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경상북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69, 2층	054-742-4336
2	고려인마을(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3	너머(사단법인)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6길 37	031-493-7056
4	다문화마을(사단법인)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65, 3층	031-495-2288
5	대전다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0	042-543-1191
6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0
7	초록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7길 4-2, 401호	041-357-7194
8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 1층	02-6900-8000
9	한민족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02-2676-6966
10	한중교류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5-3, 청암빌딩 5층	02-522-7411
11	한중사랑교회(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4, 인화오벨리아 201호	02-837-9296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인 쇄 2022년 10월

발 행 2022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